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8일, 박성민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8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1.21.) 상정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1.26.) 상정, 제안설명, 축
조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민의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충돌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또는 임직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연구자창업’ 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수립 의무, 소속 연구기관의 기술·자금·시설 지원 및 휴·겸직 허용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u>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u>
<신설>	<u>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u>
<신설>	<u>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u>
<신설>	<u>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u>
<신설>	<u>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u>

현행	개정안
<u><신설></u>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출자,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

현행	개정안
<u><신설></u>	<u>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u> <u>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u> <u>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u> <u>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u> <u>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을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u>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전담조직 설치 및 관련 내부 규정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를 두는 한편, 기술지주회사 등의 기술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설비·비용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¹⁾.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해당 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것도 기술 사업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으나²⁾ 이는 현행법상 정부의 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³⁾.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연구개발특구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 등에서도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

1)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현행법상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법 제2조제2호), ‘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법 제2조제3호), 연구자등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도 사업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원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은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연구소 기업, △산학협력단 등의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대학·연구기관 등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그 자회사 등으로 특정되어 있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허용·지원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⁴⁾.

4)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규정>

법률	지원대상		지원사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 사업을 지배·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정부의 사업화 인력·설비·비용 등 지원 -공공연의 기술등 현물출자 또는 이전 -공공연 연구원 및 직원의 대표자·임원 재직 목적의 휴직 허용
	출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설립한 회사 또는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편입된 회사	-정부의 사업화 인력·설비·비용 등 지원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소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세법에 따른 세제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매각 특례 -공공연 연구원의 대표자·임원 재직 목적의 휴·겸직 허용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산학협력단의 출자 -국가·지자체의 설립·운영 비용 지원 -교직원 및 연구기관 직원의 대표자·임원 재직 목적의 휴·겸직 허용
	자회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대학 교직원 및 연구기관 직원의 대표자·임원 재직 목적의 휴·겸직 허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대학·연구기관의 출자 -창업진흥기금 우선지원 -교직원·연구원의 대표자·임원 재직 목적의 휴직·겸직·겸임 허용

이로 인해 공공연 소속 연구자등이 기술지주회사 등의 자회사가 아닌 형태로 직접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 창업의 신청 및 승인, 창업을 위한 휴·겸직, 창업기업에 대한 소속기관의 지원 등은 각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규정⁵⁾에 따르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충돌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⁶⁾

이렇듯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자체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⁷⁾ 연구자등의 직접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아 창업을 통한 공공기술 사업화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5) [참고 1]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지원 내부규정 사례 참조

6) 공공연구자 중 「공무원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상 영리업무 금지, 겸직금지 규정 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5),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14)

공공연구자 소속기관	공무원법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국립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	○
국립학교, 공립학교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사립학교	×	×

7) 공공연구기관 창업기업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17~'21 공공연구기관(연구자 포함) 신규 창업기업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실적(건)	299	259	271	346	407	1,582

○ '17~'21 공공연구기관(연구자 포함) 사업활동 중 기업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실적(건)	1,179	1,268	1,488	1,854	2,008	7,797

*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실적

개정안은 공공연 소속 연구자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창업지원, 휴직·겸직·겸임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출자,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등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사항들을 법률로 명확히 한다면, 연구자등의 창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 및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연 기술을 활용한 자체 창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연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⁸⁾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7년까지 휴직하거나 겸임 및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⁹⁾, 개정안의 휴직 특례는 「벤처기업법」 보다 오히려 축소된 측면이

8)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23~’25) (관계부처 합동, ‘22.12)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휴직·겸임·겸직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나,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근거는 현행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¹⁰⁾ 법률 개정 시 현행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0)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법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교육공무원등의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수정주요내용

1. 기술지주회사의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규정을 정비함
(제21조의7제1항 삭제).
2.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안 제25조의4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의7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안 제25조의4제1항 중 “6년”을 “7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현행과 같음)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삭제>
② (생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 ----- ----- ----- ----- -----.
<신설>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① -----

<u>자등은 「교육공무</u>	-----
<u>원법」 제44조제1</u>	-----
<u>항, 「국가공무원</u>	-----
<u>법」 제71조제2항,</u>	-----
<u>「지방공무원법」</u>	-----
<u>제63조제2항 및</u>	-----
<u>「사립학교법」 제</u>	-----
<u>59조제1항에도 불</u>	-----
<u>구하고 그 소속 기</u>	-----
<u>관의 장의 허가를</u>	-----
<u>받아 기술지주회사,</u>	-----
<u>출자회사 또는 창</u>	-----
<u>업기업의 임직원으</u>	-----
<u>로 근무하기 위하</u>	-----
<u>여 6년 이내의 범</u>	-----7년-----
<u>위에서 휴직할 수</u>	-----
<u>있다.</u>	-----.
<u>② 공공연구기관의</u>	② ~ ④ (개정안과
<u>연구자등은 「교육</u>	같음)
<u>공무원법」 제18조</u>	
<u>제1항, 제19조의2제</u>	
<u>1항, 「국가공무원</u>	
<u>법」 제32조의3, 제</u>	
<u>64조제1항, 「지방</u>	
<u>공무원법」 제30조</u>	
<u>의3, 제56조제1항</u>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

	<u>에 따라 휴직 · 겸</u> <u>임 · 겸직을 받은</u> <u>사람은 이로 인하</u> <u>여 신분상 불이익</u> <u>을 받지 아니한다.</u>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제21조의7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출자,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을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공공연구자창업</u> ”이란 <u>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12. “ <u>창업기업</u> ”이란 <u>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u>
<u><신 설></u>	13. “ <u>창업자</u> ”란 <u>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u>
<u><신 설></u>	14. “ <u>예비창업자</u> ”란 <u>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u>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u>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u>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u><삭 제></u>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
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
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에-----

-----.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
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
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
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
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
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
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
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
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
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
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
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
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
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
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
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
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
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

<신 설>

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출자,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을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